



디지털 아트 저작권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연구

<문화매개와 콘텐츠>, <국제통상법> 강의페어링

202021802 문화콘텐츠학과 김선빈_박재연 교수님 지도

[1. 서론]

1) 연구 주제



<문화매개와 콘텐츠>
디지털 아트 매개



<국제통상법>
법적 쟁점 연구

= 디지털 아트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필요성

4차 산업 혁명 시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 시장의 성장을 통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분야는 디지털 아트 시장이다. 2000년대 초 디지털 환경 도래 이후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대가 없이 '불법복제'되는 상황에 맞서 '웹하드 등록제', 'OSP 책임 부여' 등 권리 보호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크고,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디지털 '원본'과 '희소성', '소유권' 개념이 부여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자산'으로써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K-디지털아트가 발전의 제약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의 사회적인 제도와 법으로는 부족하다. 전통적인 크리에이티브를 보존하면서, 디지털 아트 작가와 작품을 보호하는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목적

지난 3월, <검정고무신>의 원작 그림작가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원작자에게 불리한 저작권 계약 관련 논란이 주목받았다. 만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콘텐츠 계에서는 여전히 창작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는 일이 횡행하며, 이는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불합리한 관행을 업애하고 저작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예술 생태계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를 진행한다.

4) 연구방법

- (1) 기본 개념 정의
- (2) 디지털아트 관련 저작권 사각지대 사례 분석
- (3) 디지털아트 저작권보호법의 국제적 동향
- (4) 디지털아트의 현행법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및 정책 제언

[2. 연구방법]

1) 개념정의

(1) 디지털아트

디지털아트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조각·회화·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 행위를 뜻한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 아트와 멀티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다양한 예술 작품과 작업이 모두 디지털아트라는 개념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예술은 특히 대량생산 방식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현대 예술부터 전통적인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등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폭넓은 예술 장르에 걸쳐 시도되고 있다.

(2)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일반적 개념은 교통부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의 분야에서 '사각지대'로 쓰이는 용어로서의 의미로, 디지털 아트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3. 연구결과]

1) 국내 디지털 아트 저작권 사각지대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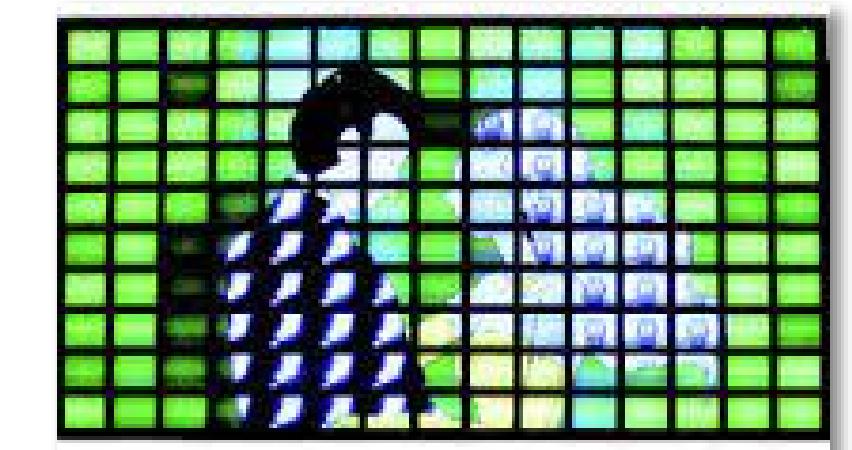
(1) 김환기·박수근·이중섭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세 거장의 작품이 NFT화하여 경매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저작자의 반발에, 위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행사주최 측의 문제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김환기의 작품과 이미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환기 재단 및 작가의 유족들은 NFT 작품 제작 및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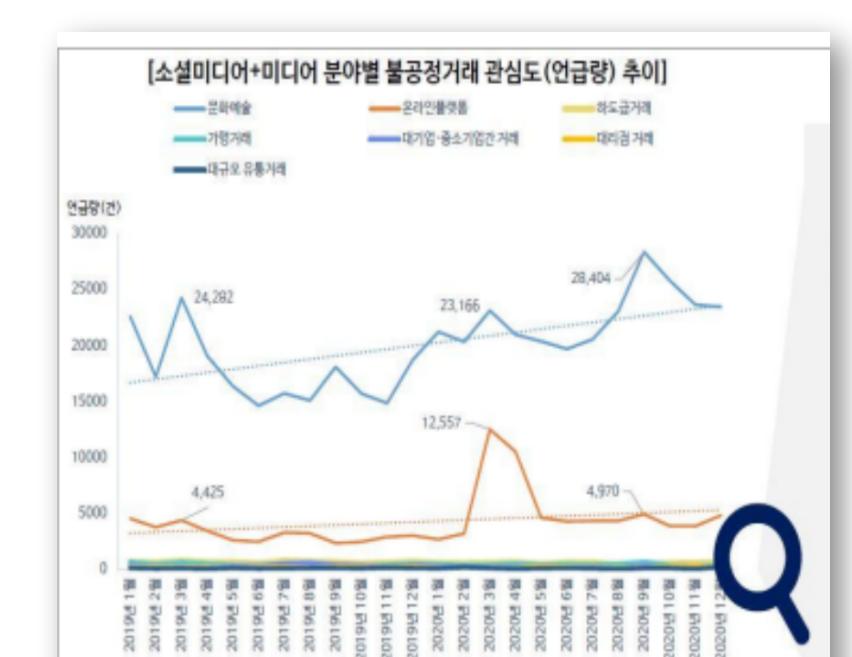
(2) 픽셀아트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주제별 작가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2010년도부터 픽셀아트로 모나리자, 고흐 등 명화 시리즈 작품을 그렸다"며 오픈시(OPENSEA)에서 자신의 작품이 아무런 동의 없이 NFT로 발행돼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게 판매된 금액만 3억 원에 달했다.(코인데스크코리아, 2022) NFT 발행 후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나, 발행 전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자 불명의 고아저작물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디지털 자산화해 NFT 거래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5월 서소문 옛 대법원 건물로 이전 개관하면서 백남준의 작품 <서울랩소디>를 구입해 로비에 전시해 왔다. 미술관은 2005년 11월부터 백남준이 만든 작품의 내용물인 DVD 일부를 빼내고 대신 청계천 홍보 영상물을 상영해 와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제작해 반복 상영된 영상들은 모두 40분 분량이다. 백남준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 사건은 작가의 의사와는 무방하게 작품이 변질되었다.



(4) 2021년 서울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76%를 차지하는 등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등 5개 분야만 집계될 뿐 시각예술은 없다. 국제 저작권 연맹 통계 역시 한국 미술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미술 분야나 한국의 출판·음악 저작권 관련 자료는 수록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 디지털아트 저작권 보호법의 국제적 동향

(1) 베른 협약의 보상청구권

작가가 미술 작품을 판매한 후 그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리는 '미술작품의 재판매 보상청구권', '추급권(追及權)', '추구권(RESALE ROYALTY RIHGT, DROIT DE SUITE)' 등으로 불리고 있다. 베른 협약은 이러한 권리의 인정여부를 동맹국의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2019년 싱가포르 '저작권 검토 보고서'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저작권 체계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11월 21일부터 저작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사회적 편의와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저작권 예외 사유의 조정 및 추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싱가포르 전부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4. 결론]

1)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활용한 저작권 법 개정의 필요성

예술 작품 관련 계약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형식이 아닌, 창작자에게 저작권과 수익의 일정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상 NFT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거래될 때마다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정책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은 창작자의 권리이기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게다가 디지털 아트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비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므로 창작자의 저작권 비율 상승이 필요하다.

2) 창작자의 권리 강화 목적 저작권 보호 정책 도입

창작물의 2·3차 가공 제작물과 디지털 아트로의 전환에 있어, 창작자의 명확한 동의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 역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